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3.

발의자 : 김동훈, 한근수, 정현미,
원주영, 박은경, 이정애

1. 제안 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가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남양주시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 - 남양주시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, 사용 · 수익 및 관리 위탁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, 사용·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,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 ① 시장</u></p> <p><u>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</u></p> <p><u>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</u></p> <p>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</u></p> <p><u>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</u></p> <p><u>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</u></p> <p><u>으로 대부, 사용 · 수익하게 하거</u></p> <p><u>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</u></p> <p>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,</u></p> <p><u>사용 · 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</u></p> <p><u>건,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</u></p> <p><u>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남양</u></p> <p><u>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</u></p> <p><u>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u>제11조 ~ 제15조 (생 략)</u>	<u>제12조 ~ 제16조 (현행 제11조부터</u> <u>제15조까지와 같음)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1조(공유재산의 사용 등)

① 시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·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- 남양주시 체육회의 사무실 임차료를 「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0조에 의거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, 공유재산을 관련 조례에 의거 무상 사용할 경우 세출 예산의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기존에 대부, 사용 · 수익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신규로 무상 대부, 사용 · 수익하게 할 경우 운영비로서 지원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 세출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나,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해당 관리 기관(부서)의 수익이 감소하여 세입 예산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됨

※ 남양주시체육회 공유재산 사용료(사무실 임차료) 약 19,000천원 (1년 / 365일 기준)

☞ 세입의 감소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함

4. 작성자

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유 형 식

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 ·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· 사용 · 수익의 내용 ·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26.]